

연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2016. 06.



Contents

제1. 현황의 발제

1. 연금제도와 운영의 주체
2. 연금에 적용되는 세금
3. 연금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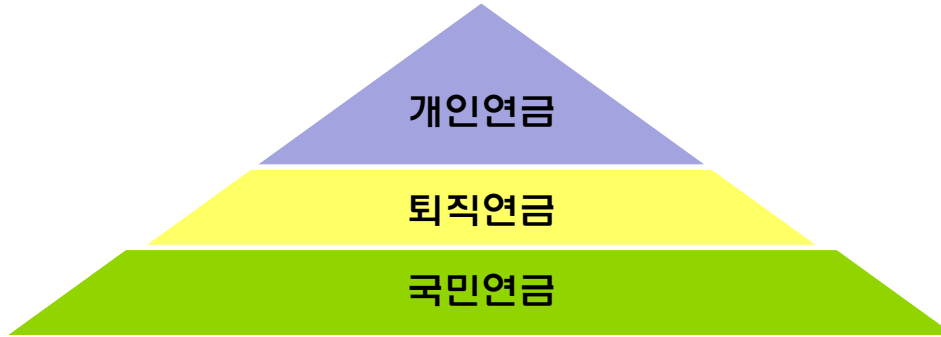
제2. 개선 희망사항

1. 현황의 요약
 2. 제도 및 기능의 제고
-

제1. 현황의 발제

1. 연금제도와 운영의 주체

연금의 3층 구조



연금제도와 운영

연금 제도			근거법률	소관부처	소득세법
공적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제12조 제4호 가목 (비과세소득)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연금소득)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행정안전부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육부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국방부	
사적 연금 (연금계좌)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제22조 (퇴직소득) 제20조의3 제2항 (연금소득) 제21조 제 1항 제21호 (기타소득)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개인연금)	연금저축신탁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연금저축펀드	자본시장법		
		연금저축보험	보험업법		

제1. 현황의 발제

1. 연금제도와 운영의 주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IRP가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IRP 가입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의견]

- 특수직역연금가입자는 퇴직금제도의 부재로 IRP가입이 불가능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퇴직 후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가입은 가능
가입공단에서의 과세환급문제가 있고, 특히 지방세의 경우 환급의 절차가 복잡

퇴직연금계좌 추가적립금 현황

구분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14.12월	403	16	813	1,232
15.12월	572	20	6,556	7,147
차이	169(41.9%)	3.7(23.1%)	5,743(706.4%)	5,915(480.1%)

- 소득공제제도 확대로 IRP 적립금 증가
- 특수직역의 연금자산 확대
- 특수직역의 이연퇴직금 제도 보완
- 특수직역의 퇴직급여 연금전환 체제 확보

2. 연금에 적용되는 세금(1)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퇴직세액의 범위

-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임원 퇴직금의 계산에서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CEO플랜 등)가 있어서 세법에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2016년 5년단위를 12년단위 연분연승으로 고액퇴직자에 대한 과세를 추가하여 강화

퇴직세액의 계산

- 1년단위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을 재직연수로 나누어 연간 퇴직소득 환산 후 재직연수를 곱하여 산출)
퇴직소득은 재직기간 중 누적된 소득을 일시에 받으므로 분류과세 적용
- 2013년 1년단위를 5년단위 연분연승으로 개정 (고액퇴직자 과세강화)
- 2016년 5년단위를 12년단위 연분연승으로 고액퇴직자에 대한 과세를 추가하여 강화

임원의 퇴직급여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한도 제한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적립하거나 이체(60일 이내)한 경우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주는 제도
-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제1. 현황의 발제

2. 연금에 적용되는 세금 (2)

연금계좌의 과세

연금계좌 납입요건

-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 해당 과세기간(매년) 이전의 보험료 납입 불가.
다만, 보험의 경우 최종납입일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 그동안의 연금보험료 납입 가능
-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음

연금계좌 수령요건

※ 아래 요건 미 충족시 연금외수령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이후 인출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인출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예외)
- 한도액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연금계좌 납입요건

- (1) 과세제외금액 (당해연도 납입분, 매년 납입액 중 세액공제 초과액, 기타 과세제외로 확인된 금액)
- (2) 이연퇴직소득
- (3) 과세대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운용수익)
- 연금수령의 경우 (1)은 과세 제외, (2)는 퇴직소득세의 70%, (3)은 연금소득세 (3.3% ~ 5.5%)
- 연금외수령의 경우 (1)은 과세제외, (2)는 퇴직소득세, (3)은 기타소득세 (16.5%)

제1. 현황의 발제

2. 연금에 적용되는 세금 (3)

연금에 대한 세금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방법**

구분	원천징수	연말정산	확정신고
공적연금 소득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익년 1월 지급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해 5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 단,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없음
사적연금 소득	지급액 × 세율	연말정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해 5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 (사적연금합계 1,200만원이하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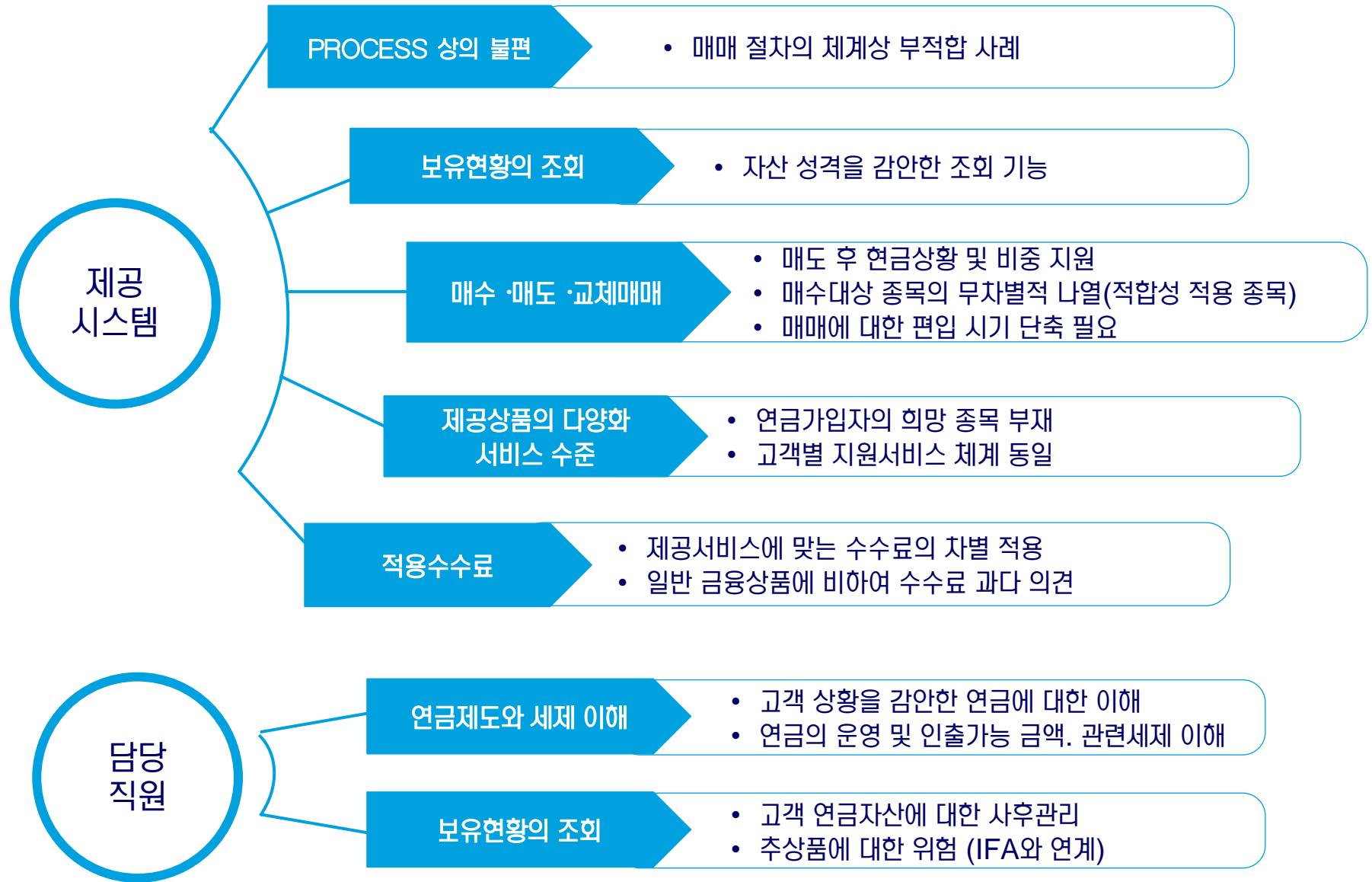
• **사적연금에 대한 적용 세율**

구분		세율	
이연퇴직소득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연금외수령에 비하여 70%	
사적연금 납입액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자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55세 ~ 70세 미만	5.5%
		70세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연금 (사망시 까지 중도해지할 수 없는 계약)		4.4%

• **연금적립금의 수령형태별 과세소득 분류**

구분	납입 시	연금형태 수령시	연금외형태 수령시
공적연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소득(`01년 납입분 비과세)	퇴직소득(`01년 납입분 비과세)
사적연금	연 7백만원한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 저소득자는 15% 공제	연금소득 * 부득이한 사유 인출 분리과세	퇴직소득 * 자기납입(운용수익) 기타소득
		연금소득 * 부득이한 사유 인출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제1. 현황의 발제
3. 연금 사업자



1. 현황의 요약

제도와 운영주체

- 근거 법률과 소관 정부부처의 분산
- 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 필요
- 연금 납입에 대하여는 기능별 차등, 인출에 대하여는 동일화

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 근거법별 연금에 대한 세제 차이
- 퇴직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분산
- 세제의 변경 (퇴직소득 등에 대한 변동)

연금 사업자

- 시스템 효율성 제고
- 담당직원의 업무 이해도
- 제공서비스의 다양화
- 연금가입자에 대한 사후 관리

- 개인별 통합된 연금자산 관리 애로
- 세후 수익 등 세제상의 영향에 대한 확인 곤란
-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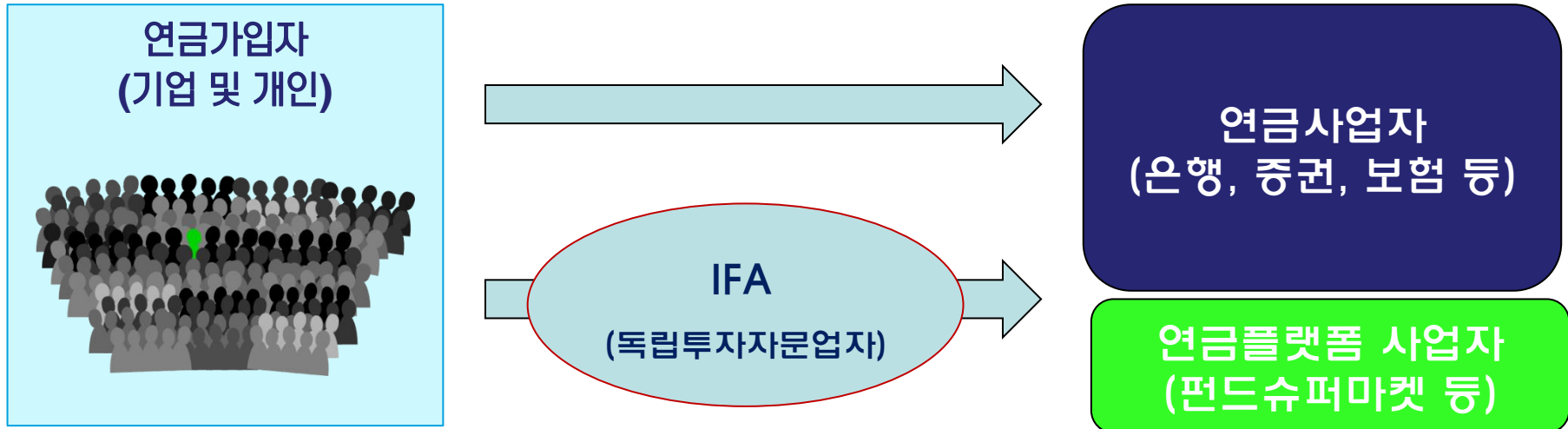
2. 제도 및 기능의 제고



• 2016. 05. 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연금 관련 근거법률 제정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
- 투자일임 방식을 추가하여 Model portfolio · 자산배분형 · Life cycle fund · 디폴트옵션 등
- 연금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

2. 제도 및 기능의 제고 (IFA 연계에 의한 연금산업 활성화 한계)



- 연금과 관련한 IFA의 기대 기능

- 연금가입자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싱가폴의 경우 IFA와 플랫폼사업자 공동으로 연금가입 법인에 대한 교육이 주요 사업)
- 고객별 자산관리 자문 및 사후 관리

- 국내 현실을 고려한 한계

- 연금사업자와의 보수 배분의 문제
- 시장에 IFA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 제공자 필요 (업무지원, 낮은 다양한 상품)
 - ※ IFA는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이며, 체계적 지식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

2. 제도 및 기능의 제고



의견

감사합니다.